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일 시 : 2023.07.04.(화) 14:00~16:30

장 소 : 온라인 ZOOM

주 최 :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

이미경\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발제

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_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_IBS법률사무소/피해자 변호사

## 토론

1.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_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_인천지방법원 판사
3.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질의응답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목 차」

#### 발제

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_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_IBS법률사무소/피해자 변호사

#### 토론

1.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_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_인천지방법원 판사
3.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부록

1. 피해자 최후의견\_2019.07.25.\_1심 재판(피고인측 반대로 읽히지 않음)
2. 피해자 발언문\_2020.07.08.\_준강간공대위 발족·과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3. 피해자 발언문\_2023.04.27.\_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4. 피해자의 글\_2023.06.\_강간죄개정연대회의 리포트
5.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6.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문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발 제」

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_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_IBS법률사무소/피해자 변호사





##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 성 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1. 들어가며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는 CCTV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해자를 함께 옮겨 성폭력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017년 5월 5일 피해가 발생하고 만6년간 가해자의 처벌을 바랐던 피해자와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 공대위)> 활동가들은 CCTV와 같이 물적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조차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사례는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본 사건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실상 협소하고 편협한 관점과 낮은 성인지각수성이 판단의 기준을 사건마다 달리하여 피해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이라 불렸던 본 사건의 발생과정과 판결요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준강간사건 심리에서의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준강간죄의 판단기준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사건의 발생과정 및 판결의 요지

표 1. 사건 발생 과정

일시	사건의 상황	피해자 주장 및 추정 상황/관련 증거 토대	가해자 주장
2017. 05. 04. 밤 11시경	피해자와 친구 두 명 클럽방문	<p>&lt;피해자 진술&gt;</p> <p>-피해자와 친구들의 가방은 한꺼번에 클럽측에 맡겼으며 가방을 찾으려면 함께 찾아야 하는 구조</p> <p>-피해자는 친구들과 컷차 탈 때까지 놓고 가기로 함</p>	
2017. 5. 5. 오전 3시 30분경	피해자와 가해자 만남	<p>&lt;카카오톡 기록, 피해자 진술&gt;</p> <p>-<u>피해자는 흩어져있던 친구들과 위치를 확인하고(3시15분, 23분) 만나기로 하여 이동하다가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함.</u></p> <p>-<u>피해자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고, 그때까지만 앉아있겠다’ 고 말하고 술을 한 잔 마신 후부터 기억없음</u></p>	<p>&lt;가해자 진술&gt;</p> <p>-피해자가 남자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레이디존에 혼자 있어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함</p> <p>-술을 마시다 호감이 생겨 서로 키스 등의 스킨십을 했다고 함</p>
2017. 05. 05. 오전 3시 48분	피 해 자 피해자 통화안됨	<p>&lt;통화기록, 피해자 친구 사실확인서, 피해자 친구 법정진술&gt;</p> <p>-피해자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았음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끊음</p>	

<p>2017. 05. 05. 오전 3시 50분 ~오전 5시 30분 경</p>		<p>피해자 위치파악 안 됨</p>	<p>&lt;카카오톡, 통화기록&gt; -피해자 친구들이 클럽안팎에서 피해자 찾아 다님 3시50분: 안팎에서 안 보인다는 메시지 4시35분: 실종신고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p>	
<p>2017. 05. 05. 오전 4시 10분, 4시 18분</p>	<p>기 억  완 전  소 실</p>	<p>-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p>		<p>&lt;가해자 전화기록&gt; -가해자는 친구 A에게 전화하여 ‘<u>피해 자와 성관계하기로 했다며 집에 가는 길 에 내려달라</u>’고 차를 가져온 친구 B에 게 <u>가자고 말해라,라고 통화했다고 함</u> (검찰진술까지 동일) (**실제 가해자→ A 통화기록 X 가해자→ B 통화 기록 O)</p>
<p>2017. 05. 05. 오전 5시 30분경 ~오전 7시 23분</p>		<p>피해자 위치파악 안 됨</p>	<p>&lt;카카오톡 대화&gt; -피해자 친구들이 클럽을 나와 홍대 거리까 지 피해자를 찾아다님</p>	
<p>2017. 05. 05. 오전 5시 50분</p>		<p>모텔 도착</p>	<p>&lt;카카오톡 대화&gt; -클럽을 나와 홍대인근 길에도 안 보인다, 길 도 모르는 애가 어디있냐, 죽은 것은 아니냐, 대답이라도 해라,</p>	<p>&lt;CCTV&gt; -B의 자동차에 가해자와 친구 A, C 그리 고 피해자가 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뒷 좌석 가운데 앉았다고 함</p>

			<p>-피해자는 차에서 내릴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상태에 소지품도 없는 모습이었음. 혼자 내리지 못 해 가해자와 A가 부축을 하였고, 이미 폴더처럼 상체가 숙여진 상태였음.</p> <p>-모텔 직원은 차 앞으로 마중을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가 몸이 숙여져있자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들고 모텔직원이 확인함</p> <p>-가해자와 A가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는 그대로 쓰러짐</p> <p>-A는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모텔방안까지 데려다주고 감</p> <p>**모텔직원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자가 술은 좀 먹었지만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었다고 제출</p>
<p>2017. 05. 05. 오전 11시 50분 경</p>	<p>피해자 깨어남</p>	<p>&lt;피해자 진술/카카오톡 대화&gt; -<u>피해자/가해자 모두 완전히 탈의된 상태</u> -<u>바닥에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 껍질</u></p>	

		<p>이 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음.</p> <p>-피해자는 위치 확인하기 위해 모텔안 충전기에 충전하며 옷을 입고 가해자가 깨어나지 않게 쪼그리고 있었음</p> <p>-친구들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메시지 보내고 충전 기다리다가 다시 잠이 듦</p>	
2017.05.05. 오후 1시 이후	가해자 깨어남	<p>&lt;피해자 진술/통화내역&gt;</p> <p>-가해자가 깨워 일어나게 됨</p> <p>-가해자가 위협적이지 않아 자신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함 (피해자의 부재중기록에 1시 1분경 친구가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1시~2시 사이 깨어난 것으로 추정)</p>	<p>&lt;가해자 진술&gt;</p> <p>-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겠다고, 침대위로 올라오라고 함.</p> <p>-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단 둘이 택시를 타고 왔다” 고 말함</p>
2017.05.05. 오후 2시 전후	강간	<p>&lt;피해자 진술&gt;</p> <p>-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억압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p> <p>-<u>피해자는 아프다,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u></p>	<p>&lt;가해자 진술&gt;</p> <p>-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더니 싫다고 하여 멈췄다가 피해자가 모텔에서 안 나가고 계속 자고 있어 다시 성관계를 시도했더니 콘돔을 끼라</p>

		고 밀어내며 저항하다가 가해자의 성폭력 시도에 계속되자 “하려면 콘돔이라도 꺼라”라고 말하고 가해자가 콘돔을 뜯는 사이 상황을 벗어나려 몸을 일으키다가 가해자에게 저지당하여 강간에 이름.	며 동의를 했다고 말함.
2017. 05.05 오후 3시 경	강간 이후	<b>&lt;피해자 진술/녹취록&gt;</b> -양치를 하고, 피해자의 분실된 반지(친구들과의 우정반지)를 찾으려 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대화	<b>&lt;가해자 진술/녹취록&gt;</b> -가해자는 이 상황을 녹음 -녹취록 상 피해자에게 단 둘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외곽으로 왔다고 말함
2017,05,05. 오후 3시30분경	퇴실	<b>&lt;CCTV/녹취록&gt;</b> -가해자가 앞서 가고 피해자가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 -퇴실 시 피해자는 자신의 옷에 묻은 것,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는 것 등에 대해 질의	<b>&lt;CCTV/녹취록&gt;</b> -모텔직원은 사이좋게 농담하고 웃으며 퇴실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2017. 05.05. 오후 3시 58분경	퇴실 이후 헤어지기까지	<b>&lt;피해자 진술&gt;</b> -숙취가 심했던 피해자가 목마르다고 하니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주고 헤어짐. -당시에도 피해자는 속이 안 좋은 듯 토할 것 같다는 말이 녹취록에 있음	

표 2. 결정 또는 판결의 요지

법적 진행 과정	판결 요지
2017.11.07. 불기소 / 인천지검 결정 이유	<p><b>&lt;간음유인 및 준강간미수&gt;</b>                      ①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하지 못 하는 점, 이로 인해 가해자 주장처럼 스킨십 여부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 한다는 점 등은 모텔CCTV를 통해 확인되나,                      ②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신고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머문 점, 모텔 안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피해자는 강간이라 진술하였음) 등으로 <u>준강간미수나 간음유인을 인정할 수 없다.</u></p> <p><b>&lt;유사강간 및 강간&gt;</b>                      피해자가 깨어났음에도 바로 신고하거나 구조요청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침대위로 올라오라니 스스로 올라간 점,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을 한 점, 사건 이후 모텔에서 함께 나와 가해자가 산 초코우유와 젤리를 산 뒤 헤어진 점, 범행 이틀 후에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p>
2018.02.26. 항고기각 서울고검 결정 이유	기록검토 결과 항고 이유없음
2019.03.08. 재정신청 서울고법 결정	<p><b>&lt;준강간미수&gt; 기소명령, 나머지는 기각</b>                      피의자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 할 의사로 모텔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어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가 의식 없는 피해자의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u>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u></p>
2019.07.25. 무죄 1심 인천지법 판결	<p><b>&lt;배심원 평결 유 2: 무 5&gt;</b>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p>

<p>2020.05.07. 항소기각 2심 서울고법 판결</p>	<p>①피고인이 <u>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려는 준강간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u></p> <p>②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대화가 <u>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겠으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u></p> <p>③CCTV상 피해자의 상태로 볼 때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u>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을 수 있으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u> 피고인은 피해자 옷을 벗기다 보면 피해자가 깰 것이라 생각했고, 다음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④실제 이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강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u>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u></p> <p>⑤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는 피해자와 성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장애가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p>
<p>2023.04.27. 상고기각 3심 대법원</p>	<p>준강간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p>



### 3. 법적진행과정에서 진술 혹은 제출하였으나 삭제된 상황과 맥락

#### ①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속옷에 생리대가 부착되어 있었고(가해자는 못 봤다고 부인), 피해자가 친구와 5월 1일 카카오톡 대화상 생리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4생리 4-5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는 생리중이어서 가방안에 생리대가 있었으나 가방조차 챙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 유사강간 이후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묻은 것과 같이 상의 단추, 하의 속옷 등에 생리혈이 묻어있었음.(해당 흔적이 생리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수사 당시 국과수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② 피해자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간접 정황

피해자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였다가 연락이 안 되어 친구들이 수시간동안 클럽안팎을 찾아다닌 점(피해자는 친구들과 컷차까지만 놀기로 하였고, 가해자가 말을 시킬 때 흩어져있던 친구와 만나기로 한 상태라 친구울 때까지만 앉아있겠다고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음). 소지품 하나 없이 이동한 점(가해자의 주장처럼 성관계에 동의하여 스스로 가해자와 이동하기로 한 것이라면 최소 친구들에게 상황을 카카오톡 등으로 남기고,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적임)

####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가해자의 주장,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난 지 30분만에 성관계에 동의, 서울외곽으로, 남성 4명과 함께 새벽시간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학교진학을 위해 서울로 온 바 서울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사건발생 장소는 피해자가 한번도 가본적 없는 도시였음. 피해자가 길도 잘 못 찾고 서울인근을 잘 모른다는 것은 카카오톡에서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며 언급하여 내역에도 존재함. 더구나 동의를 한 성관계라면 서울이 아닌 외곽도시까지 갈 이유가 없음(가해자는 서울의 모텔비가 비싸 자신의 동네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의를 한 성관계라면 피해자가 모텔비를 납부할 수도 있어 굳이 낮은 동네로 갈 이유가 없음)

#### ④ 피해자의 기억소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진술

가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난 이후 경위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점(가해자는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단 둘이 택시를 탔는데 피해자가 잠이 들

어 모텔로 왔다고 말을 함. 피해자는 기억을 못 하였기에 자신이 정말 그랬는지 되묻기만 하였고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신고 이후에 알게 되었음.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음. 가해자는 이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꼬치꼬치 얘기하기 귀찮아서 택시타고 온 것이라고 말한것이라 진술함.)

**⑤ 가해자가 제출한 녹취록<sup>1)</sup>과 상반되는 법적과정의 주장㉔**

가해자는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러 간 사정의 하나로 클럽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나이, 사는 곳, 학교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는 주장하였으나 가해자 제출한 사건 당일 오후 녹취록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 사는 곳 등을 묻고 있어 클럽안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거짓진술이며 피해자는 헤어질 때까지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음.(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 해 편의점에서 가해자가 계산을 한 것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함)

**⑥ 가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상반되는 법적과정의 주장㉕**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여 예비책으로 녹음을 하였고, 녹음중이기에 강간(깨어난 이후의)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법정에 제출된 녹음과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은 포함되지 않음. 만약 동의한 성관계라면 녹음을 할 이유도 없으며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이기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

**⑦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편집정황**

가해자는 1심에서 휴대폰을 바꾸면서 녹음원본은 잃어버렸다고 총 다섯 개의 녹취록만 제출함. 어떤 방식으로 녹음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는 피해자의 말에 녹음을 눌러 헤어질 때까지 통으로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 고 진술함. 녹취록이 나뉘어진 이유와 편집을 했는지에 대해 자신은 편집할 줄 몰라 파일째 녹취사무소에 의뢰하였고 녹취록이 왜 나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녹취사무소에 확인해보면 알 것 같다고 함.

2심에서 가해자는 녹음파일을 찾았다며 다섯 개로 분할되었고 키워드를 제목으로 붙은 파일이 담긴 CD를 제출함. 가해자는 자신이 착각했다며 몇 시간 통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스타트/정지를 눌러서 녹음한 것이라 진술. 재판부에서는

---

1)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녹음파일 존재에 대해 1심에서 알게 되었으며, 가해자가 경찰에서 녹음파일이 있는데 곧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받지 않은 채 검찰 송치, 검찰에서는 경찰의 해당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는지 수사과정에서 녹음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음.

이에 대한 신빙성 판단도 없음

⑧ 가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조작정황

가해자는 1심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심지어 반지를 사달라고 조르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함. 가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내용상으로는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나는 경위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사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음.(피해자는 자신은 반지를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반지를 잃어버려 찾긴 했었다고 기억함)

2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들은 결과 실제 가해자가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는 침묵의 시간이 반복되며 길게는 30초가량 말이 없기도 하고,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반지(친구들과의 우정반지)를 찾아야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음. 결국 가해자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조르는 것처럼 녹취록을 왜곡하여 작성한 것을 알게 됨. 이에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속기 사무소에 맡기며 침묵까지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자연스러운 대화라기 보다 가해자가 주로 말을 하고 피해자는 한숨을 쉬거나 침묵하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⑨ 녹취록, CCTV, 통화기록에 부합되지 않는 목격자의 진술㉑

가해자 친구들 A.B.C는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스킨십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장소, 몇 회나 스킨십을 했었다는 횟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진술 등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가해자와 목격자간, 목격자와 목격자간 증거기록과 일치되는 것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함. 또한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만취가 아니었고, 동의한 성관계라서 친밀하게 퇴실했다는 모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CCTV나 녹취록에는 이에 부합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

⑩ 녹취록, CCTV, 통화기록에 부합되지 않는 목격자의 진술㉒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러 서울외곽으로 가기로 했다고 친구 A에게 전화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가해자 친구 A의 진술은 항소심 무죄 판결의 중요한 진술로 판단이 되었음. 그러나 해당 시간에 실제 가해자와 A는 통화기록이 없음.

A는 법정에서 둘의 통화기록이 없고, 가해자가 B에게 발신한 기록만 있다는 것이

제시되자 “자신의 전화가 고장나서 B의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모텔 데스크에서 A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고, B 또한 모텔 도착 후 차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차에서 내려 모텔안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모텔안에서 A가 사용한 휴대폰이 B의 것이 아님은 알 수 있고, 모텔 퇴실 직후 가해자가 A에게 전화한 기록도 있어 전화가 고장났었다는 A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음.

#### ⑪ 피해자의 신고경위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체상태이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성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은 하였으나 기억이 없기에 준강간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생각지 못 함. 사건 당일 오후 발생한 강간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발생하였는데 가해자는 강간 이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함. 피해자가 느낀 이 혼란스러움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에 그대로 남겨져있는데 한 친구가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게 됨.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 강간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위를 이야기하고 CCTV에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확인되면서 사건이 만취상태였던 준강간미수(피해자 기억에 없고, 가해자는 성관계를 부인하여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정해짐.), 간음유인과 명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유사강간, 강간으로 죄명이 정해짐

#### 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도 진술한 피해자

피해자는 초기 신고때부터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콘돔을 사용하라는 말을 한 사실, 초코우유를 얻어먹은 사실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하였음.

### 4. 피해자의 피해경험과 목소리는 왜 삭제되었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하다.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했고 기억에 없지만 성폭력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술에 취하지

않았고 동의하여 성관계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CCTV나 목격자 증언, 사건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기록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되고, 이때 수사 및 재판기관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는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보며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준강간 사건에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시<sup>2)</sup>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면밀하게 살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다는 사실,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와는 어떠한 연고도 없이 모르는 도시였다는 사실,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에 가방을 챙기거나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 했던 사실, 클럽에서 모텔까지의 거리가 30분정도 소요되고 도착당시 이미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 등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 이미 항거불능 상태였을 수 있음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해자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किन십이 있었고, 가해자의 진술처럼 동의가 있었을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피해자의 성폭력을 지우고 가해자 입장의 판단을 가능하게 했을까?

### ① 음주 및 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

본 사건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 라며 술에 인한 성폭력, 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에 대한 강한 통념을 드러냈다. 기소명령이 되어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되자 검사는 피해자측에 “이런 사건(클럽/술로 인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며 배심원단의 판단에 편견이 작동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클럽에서 만난 상대라면 혹은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라면 알코올로 인하여 감정적 충동과 본능에 이끌려(심지어 피해자가 이전에 원나잇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2) 『대법원 2021.02.04. 2018도9781 판결』“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이 가해자의 진술과 맞닿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동의라 단정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하는 관점은 사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아직은 묘연해보인다.

## ② 비동의 강간을 동의한 성관계로 판단

본 사건 불기소 및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이유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신고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머문 점, 모텔 안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을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이후 발생한 성적 행위는 동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강간이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시도하자 싫다, 아프다고 거부의사를 말하고, 옷을 벗기지 못 하도록 부여잡고 가해자의 팔을 밀어내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반복·지속되자 성병이나 임신 등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가해자의 몸이 떨어지자 침대에서 빠져나오려다 저지되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sup>3)</sup>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최협의로 강간여부를 판단하여 동의없이, 유형력에 의해 발생한 강간을 동의한 성관계로 귀결시키고, 그 이전에도 동의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선불리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이는 비동의를 최협의 폭행·협박에 대한 기준으로 동의로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의 유효여부를 지나치게 유지 혹은 확장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 ③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요구

---

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시의 유형력 및 저항 정도에 대한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 저항의 형태 및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옷 등 정황증거가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하며 판단자체를 하지 않음.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성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즉시 신고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 함께 숙박업소에서 걸어 나온 것, 가해자에게 음료를 얻어 마신 것, 이를 후에 신고한 것 등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준강간사건 피해자들이 기억을 못 하는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 안전하게 피해장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등 피해 이후의 대처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늦은 저녁부터 경찰 182, 112, 서울 00경찰서 등에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외곽의 관할경찰서까지 이동하여 신고하게 된 것임에도 그 과정은 삭제한 채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판시<sup>5)</sup>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수사관행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부터였는가는 동의를 할 수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모텔에 도착하는 CCTV만 확보하였을 뿐 클럽의 출입 영상,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들의 전화 기록이 진술과 다른 점, 가해자 친구들의 진술이 CCTV와 다른 점 등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1심 재판이 끝나고 기록을 볼 수 있었던 피해자 측에서 발견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다. 더구나 사건 당일의 녹취록이 있다는 가해자의 말에도 경찰이나 검찰 모두 녹취록에 대한 제출 요청이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이미 가해자를 진술을 신뢰하였거나, 이러한 사건은 동의한 성관계일 수 있다고 편견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 본 사건은 재정신청에서 일부 기소명령이 내려진 사항으로 1심에서 공판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실제 검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자신도 좀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증거들과 다른 부분이나 비상식적인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본 사건의 경우 공판과정에서 기소된 준강간미수뿐 아니라 불기소된 강간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세세한 증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해석 및 의견개진은 없었다.

## 5. 나가며

통상 준강간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나, CCTV를 확보했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라도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피해 이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준강간 사건으로 신고 및 고소한 사건에 관해 사례를 조사<sup>6)</sup>한 결과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760명 중 249명(32.7%)에 달했고, 어렵게 신고나 고소를 했더라도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는 112명(14.7%)에 불과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준강간죄가 사법현장에서 얼마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왜곡되고 편향된 가해자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및 사법기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지, 최협의의 강간과 준강간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을 위해 반성폭력 단체의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6년간의 긴 법적 대응과정과 참담한 결과에도 다른 피해자를 위한 연대와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상세한 피해내용이 들어간 발제를 동의해주신 본 사건 피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례조사: 2019년 1월~12월 음주로 인한 준강간 피해로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



##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I. 들어가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였음이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준강간 고의를 부인하는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렇다.

① 「피고인과 그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러한 대화 내용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하나의 상황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특별한 객관적 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간음

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과 실제 이 사건 당일 오후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이 그 당시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시체와 성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다고 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도 없는 피해자와 성교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보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준강간 고의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 쉽게 수궁이 가지 않고,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 준강간 고의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생각이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해되지 않거나 수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하에서 다룰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점으로 활용되어, 향후 준강간 고의 판단에 대한 연구와 법적 개선의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II. 피해자가 사전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정황으로 본 것에 대하여**

(1) 이 사건 판결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하나의 정황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준강간 고의를 부인하는 정황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미한다.

성관계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의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성관계를 위한 스킨십 이후에도 거부할 경우 기존 동의는 무효화 된다. 그러나 준강간 피해자는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이므로, 원치 않아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의 기회가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준강간죄는 거부 기회가 박탈되는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란 측면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보면, ‘사전 동의의 가능성’을 준강간 고의를 부인하는 정황으로 간주하는 것은 준강간 보호법익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3)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쉽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준강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간죄의 법 조항과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입법을 하였는데, 사전의 정황을 고의 판단에 고려한다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의가 쉽게 부인되어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교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을 때의 성관계>를 의미하지,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포함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 범죄(카메라등 이용 촬영, 운간 등)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 하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법 감정과도 맞지 않다. 실제로 준강간 피해자들은 준강간 피해 외에도 불법 촬영, 운간 피해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한 동意的 범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성관계

를 전제로 동의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회 통념상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에 항거불능 등의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상식에 반한다거나 기존 고의 판단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성폭력의 범죄유형 및 수법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준강간의 보호법익에도 부합해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때 항거불능 등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준강간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최소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변경되었다는 것,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서 인식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시점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을 때에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준강간죄의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과 더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성교 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면, 피해자의 동의에 그러한 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포함하여 동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선불리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7) 공대위 사건의 피고인은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나면 성관계를 할 생각에 옷을 벗겠다고 주장하는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는 옷을 벗기는 정도의 자극으로 술이 깨거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더 큰 자극에도 술이 깨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여 알고 있었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눈을 뜨거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동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자극에도 의식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을 원치 않아도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임을 이용하여,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매우 쉽게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겨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고, 자유롭게 간음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피고인의 내심 의사를 판단한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

- (1) 이 사건 판결문에 언급된 사실인정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고의 관련 내심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당연하다. 다만, <준강간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도 보다 엄격한 신빙성 판단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준강간의 경우 사건 당사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정리된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나,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과 거짓을 직접 가려내어 반박할 수가 없다.

준강간의 특성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② 동의가 있었다 혹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동의한 줄 알았다, ③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적어도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도 그러한 줄 알았다」며,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라거나,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거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잘못된 결정이나 판결을 할 위험성은 일반 사건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 (4) 그렇기에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삼는 경우라면,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지, 다른 증거(피해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 참고인 진술 등 포함)와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진술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과연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들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일

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다르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일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피고인의 내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은 자신이 의식을 회복하기 전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옷을 벗긴 이후 아무 행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없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결국 피고인의 고의 부인의 근거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처음 만난 장소, 합석을 하게 된 이유 및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며, 스킨십을 하였고, 보았다는 것, 클럽에서 나온 경위, 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피고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CCTV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맞지 않고, 깨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며, 녹음을 한 경위, 녹음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신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내심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IV.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하여

(1) 이 사건은 준강간 피해 이후 추가로 강간 피해가 있었고 둘 다 신고가 되었으나 강간 피해는 재정신청을 거쳐 최종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준강간 사건만 기소되어 재판관 받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과 강간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에도, 강간 사건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강간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성관계로 치부되었고, 준강간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근거가 되어 영향을 미쳤다.

(3) 강간 사건의 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사실 인정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나 피고인은 기록을 볼 수 없기에 제대로 된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재정신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더욱이 이 사건은 재정신청 결정 이후 새롭게 시작된 1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추가(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모텔에 온 경위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할 자료인 녹취록 등)되었고, 2심에 이르러서는 1심에서 녹음한 경위, 녹음 시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제출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1심과 다르게 번복된 사실,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 피해자가 소위 ‘길치’ 인 사실 등을 확인할 증거,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정황들,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이 추가되었다.

즉 강간에 대한 불기소 결정 및 재정신청 기각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하나의 근거로 사정 변경 전 강간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 <즉,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였으나, 모든 저항이 제압된 채 강간을 당하였다>에 대해 신빙성을 판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 V. 결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준강간 고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준강간 고의를 판단



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안다.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는 판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결과는 납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궁이 되는 판결들은 많다. 그리고 최소한 결과에 이른 이유가 타당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사자의 ‘억울함’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며, 결과를 털어버리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이 그 판단을 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수궁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의구심과 혼자만의 생각들이 아직 정제되지 않은 상태라 발제 의뢰를 받고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준강간 고의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발제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도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 접근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졌다.

오늘 발제한 내용들이 적어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나, 결과에 이른 이유에는 수궁이 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발제자의 짧은 소견을 들어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패널분들이 저의 발제를 더 깊은 연구와 고찰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토 론」

1.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_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_인천지방법원 판사

3.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인지 감수성 개념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사용된 이후,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성인지적 관점, 젠더 관점, 젠더 감수성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공사영역 전반에서 젠더에 기반한 차별 및 배제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고 이해”<sup>1)</sup>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법원 판결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성희롱 사건이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sup>2)</sup>

이 판결은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부터 국가기관등의 책무 조항(제5조 제1항)을 가져와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1) EIGE, gender sensitivity,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resources/thesaurus/terms/1107>

2)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을 판단하면서 성희롱을 성폭력으로 확장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sup>3)</sup>고 추가한 것 외에는 위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차별의 이해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가져왔다. 경찰청은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성인지’를 “성별에 근거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인식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성주류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며, 여성폭력 수사와 관련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널리 이해되고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희정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연관성, 즉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폭력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구나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고 전반적인 보수화와 백래시가 확대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 차이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폭행, 협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성폭력을 성차별과 연관지어 사고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안희정 사건 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유지” 하는 것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좁게 설명한다.<sup>5)</sup> 성인지 감수성을 다룬 논문 중에서는

---

3)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4) 안재경·김세령·최이문(2023),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불쾌감 표현이 성폭력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35(1), 14쪽.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8.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취지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성차별을 감지하는 민감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 피해자다움의 편견과 성차별을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례도 있다.<sup>6)</sup>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내용 중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을 이해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수용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이해와 양성평등의 실현’ 보다도 더 강조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음’이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문제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피해자가 취약한지 여부의 판단이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사용한 다른 판결문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오독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유희재·최영주(2022)에서는 법원이 특히 무죄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피해자의’ 감수성이라고 수식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일반적 가치나 원칙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법원과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를 수 있어서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무죄를 판결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한다.<sup>7)</sup> 실제로 하급심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sup>8)</sup> 또는 “피해자의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sup>9)</sup>, “성폭력범죄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보더라도”<sup>10)</sup>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특정한 행동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 민감성 정도로 축소하여 개인화시키거나,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sup>11)</sup>, “성인지 감수성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 형태”<sup>12)</sup>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성인지적

6) 박정난(2020),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12(2), 221쪽.

7) 유희재·최영주(2022), 판결문을 통해 본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5쪽.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9. 선고, 2018고단71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8고단6121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 선고, 2019고단76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9고단1309 판결.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8.12. 선고, 2021고단1457 판결.

11)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1.10.13. 선고, 2021노18 판결.

관점이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된 증거로서 초점이 맞추어져온 역사와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의 대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던 것을 반영하듯,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하급심 판결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는지 피해자의 신빙성이지 피고인의 신빙성은 아닌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적용은 성폭력 판단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과 일반인 221명을 조사한 안재경·김세령·최이문(2023)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의 제시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쟁점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피해자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 등을 판단하도록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을 먼저 제시한 집단과 판단기준 제시 없이 시나리오만 보여준 집단의 판단을 비교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결대로 성차별의 이해, 양성평등 실현,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동에 대한 맥락적 평가 등을 포함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 피해자책임, 피고인에 대한 판단, 혐의 입증 가능성 항목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 제시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는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그룹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의 제시가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낮춘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불명확성, 제시한 표현보다 성별이나 공감 등 부가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판단기준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태양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들었다.<sup>13)</sup>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선명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은 피해자 개인의 고유한 민감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과 성차별이 연관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라는 주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여성의 피해가 많은 폭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차별로 인하여 발생, 촉진, 정당화, 사소화, 은폐되며 성폭력이 그 자체로서 성차별의 실천

---

12) 청주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2노102 판결.

13) 안재경·김세령·최이문(2023), 31-32쪽.



이고 다시 성차별을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맥락을 인식함으로써, 각 사건에서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그간 일반인의 경험칙으로 간주되어왔던 성폭력 피해자다움을 비롯한 강간통념, 피해자에 대한 불신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성폭력 통념과 성차별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통념이 성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며 차별적 구조 위에서 성폭력 통념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성폭력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

그간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태도, 성인지 감수성, 강간 통념 등이 성폭력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수도권 경찰관, 대학생, 교사, 공무원, 일반인 522명을 조사한 강문봉(2017)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시나리오에서 강간죄 무죄 판단 경향이 나타나고 피해 여성의 무고죄를 유죄로 보는 경향과 유죄시 강한 처벌 경향이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이 높을수록 강간죄 무죄 판단 경향이 높고 유죄시에도 약한 처벌 경향을 보이며 피해 여성의 무고죄를 유죄로 보는 경향과 유죄시 강한 처벌 경향을 보였다.<sup>14)</sup>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성현·임광현·성현준 외(2019)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위력 성폭력 시나리오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덜 하였고 가해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확신하는 경향이 높고 형량을 높게 측정하였다.<sup>15)</sup> 이상의 결과들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성폭력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고 입증과 처벌을 방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 성폭력 시나리오에서 성인지 감수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 책임 전가와 고통의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반면, 범죄 확신 정도와 형량 판단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정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up>16)</sup> 즉 성인 여성 피해자를 가정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지만 취약한 피해자를 가정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도 범죄

14) 강문봉(2017),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학위논문.

15) 김성현·임광현·성현준 외(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8(4), 24-25쪽.

16) 김성현·임광현·성현준 외(2019), 2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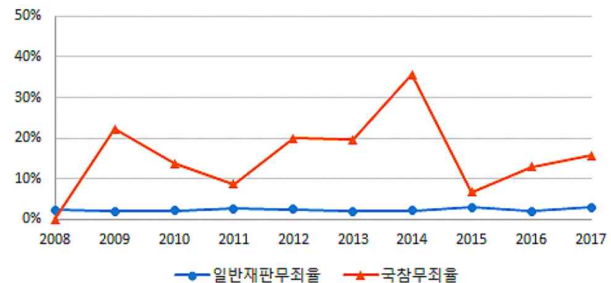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태도와 각 사건의 판단에서 ‘성폭력 피해자다움’ 전형이 작동하는 현상의 공존을 설명해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전형에 부합할수록 피해자성을 인정받기 쉽다는 것은 전형에서 멀어질수록 피해를 의심받을 것임을 뜻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통념의 영향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1심<sup>17)</sup>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유죄 2명, 무죄 5명으로 평결되었고 고등법원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친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의 배심원의 집단적 의견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1심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당심만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은 상당히 높아서(2022년 93.5%)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법관재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중 법관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차이가 가장 큰 범죄가 성폭력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법관재판 무죄율은 평균 2.4%인 반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평균 18.0%에 달하며 30%를 넘는 시기도 있었다.<sup>19)</sup> 특히 국민

〈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2008-2017)



\* 출처: 박미숙·서주연·최이문(2019)

참여재판 건수가 줄어들어 2021~2022년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연간 15건 내외로 감소하면서 22년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은 52.9%까지 상승하기도 했다.<sup>20)</sup> 다

17) 인천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9고합180 판결.

18) 신종철, 박주민 “국민참여재판 감소 문제... 판결과 배심원 평결 일치율 97% 긍정”..., 로리더, 2020.10.6.,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7>; 박진영, “피고인 허위진술에 무방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53% ‘무죄’, 세계일보, 2023.4.23., <https://segye.com/view/20230423507859>

19) 박미숙·서주연·최이문(201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Ⅲ):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0-141쪽.

20) 박진영, “피고인 허위진술에 무방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53% ‘무죄’, 세계일보, 2023.4.23., <https://segye.com/view/20230423507859>

른 범죄와 구별되는 성폭력범죄의 높은 무죄율은 배심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평결에서 성폭력 피해자다움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의 강간통념 작용이 경계되어왔다.<sup>21)</sup>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 연구들은 배심원의 강간통념이 성폭력범죄의 평결과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지혜·박우현·이수정(2014)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고소 취하 이력이 있다고 제시된 사건, 유사성매매 이력이 있다고 제시된 사건에서 배심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유의미하게 낮추었다는 결과를 내놓았고,<sup>22)</sup> 황규진·박우현·이수정(2022)에서는 가상의 준강간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sup>23)</sup> 한 외국의 질적연구에서는 설문지에서 강간통념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배심원들조차 평의 과정에서는 신체적 저항, 피해자의 무고, 남성의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 등과 관련된 통념을 드러냈음을 보여주었다.<sup>24)</sup>

## 성폭력범죄 판단 원칙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과 차별 관련 태도,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통념 등과 성폭력 판단의 관계를 감안하면, 성폭력 피해자다움을 비롯한 성폭력 통념의 적용 가능성을 신고부터 최종심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점검하여 성폭력범죄의 판단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단지 피해자의 취약성을 좀더 폭넓게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그대로 두면서 단지 범위만을 넓히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특별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

21) 발제문에서도 검사는 배심원의 강간통념 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2012년부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22) 이지혜·박우현·이수정(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3) 황규진·박우현·이수정(2022),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여성연구 114(3).

24) 배심원의 강간통념이 성폭력범죄 사건 평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를 정리한 문헌으로 Leverick, F.(2020), What do we know about rape myths and juror decision mak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24(3); 박기쁨(2022),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105-109쪽에서 재인용.

관과 법원이 차별로서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차별의 작동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적 관점)이 성폭력 사건 수사,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 원칙으로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준강간 사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 1. 준강간(미수) 법리 일반

### 가. 법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나. 보호범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u>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u> 에게 <u>성적 자기결정권</u> 을 보호해 주는 것을 <u>보호범의</u> 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

### 다. 행위의 객체

준강간죄의 객체는 <u>‘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u> 이다. 준강간죄에서 <u>‘심신상실’</u>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u>‘항거불능’</u> 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

### 라. 행위 및 착수 시기

준강간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준강간죄에서 <u>실행의 착수 시기</u> 는 <u>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u>
--

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마. 고의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2. 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

### 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할 근거 부족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긍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2)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갑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할 의사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까지 일관된 진술).

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직후 일어난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그 당시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항소심 판결 이유 참조).

### 4) 검토

판례는 간음의 의사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때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둔 사안에도 실행의 착수를 긍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간음의 의사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것인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성관계의 의사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실행을 착수한 이후에 범행을 중단한 동기에 불과하다.

1) 재정신청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388)에서 법원은 ‘피의자 스스로 신청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신청인을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어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아 이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피의자가 의식 없는 신청인에 대한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의자는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였다.

## 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 부족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준강간의 고의의 내용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한다는 의미를 오해하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2) 준강간의 고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한다는 의미

심판대상조항 중 ‘이용한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에 나아갔다는 의미이다.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한 조건이고 가해자가 이를 기회로 범죄에 나아간다는 의미로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제349조 제1항 (부당이득)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하여 ‘항거불능 상태’요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라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때 ‘이용’이라 함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 때문에 간음이나 추행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3) 검토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음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당일 오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의 내용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편승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간음에 용이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에서 인



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옷을 벗긴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발현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음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의 부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성관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준강간은 초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편승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원심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에 주목한 나머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라) 원심은 피고인이 당일 오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의 부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는 범행의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의 사후 동의나 승낙은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고의를 부정하려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에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다. 사실 인정의 문제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기초하여 사실 인정을 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분만으로 피해자의 신고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실 인정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

### 2) 피고인의 변소에 기초한 사실 인정

가) 통상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사리분별력이 결여되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용하

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피고인 진술 자체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배 영역에 있는 친구들의 진술은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간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간음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비약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한 3명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뽀뽀하며 손잡고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 3)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신고와 반대되는 사실 인정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일 오후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에 관하여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나)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

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 2614 판결 참조)

다) 검토

피고인이 강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 부분 성관계가 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원심은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 기각을 근거로 이 부분 성관계를 합의된 성관계로 단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준강간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준강간에 관하여도 합의된 성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라. 판결문 이유 기재의 불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누락**

1) 판결문의 이유 기재

제1심 판결은 배심원 평결결과(유죄 2명, 무죄 5명)만을 기재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시와 함께 판결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낱안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 2562 판결 등 참조).

### 3) 검토

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나(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 배심원이 평결결과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반대해석상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대법원도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만을 원용하면서 이유를 기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위,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심증의 제시가 가능한 점,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한 판결서 초고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제1심에서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물론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과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 기재를 하여야 하고, 특히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이유 기제가 없는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본다.

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술 자체의 합리성, 경험칙 부합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여부, 증인의 진술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하급심은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술을 마실 당시의 상황, 호텔(모텔)로 이동한 경로, 피해자가 호텔(모텔)에 들어갈 때의 상태, 피해자가 호텔(모텔)에서 나올 때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 인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채택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3.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보완

#### 가.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비율 증가

2008년경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측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시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피고인이 재판 전략상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 나. 성범죄 사건의 무죄 평결 비율<sup>2)</sup>

성범죄 사건은 인적 증거에 의존한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다른 강력 범죄의 3배 내지 9배가 넘는 무죄 평결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다.

#### 다.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1)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 배제결정 신청권 등

---

2) 박기쁨,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104쪽 참조, 사법정책연구원(2022),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2008년~2020년)을 참조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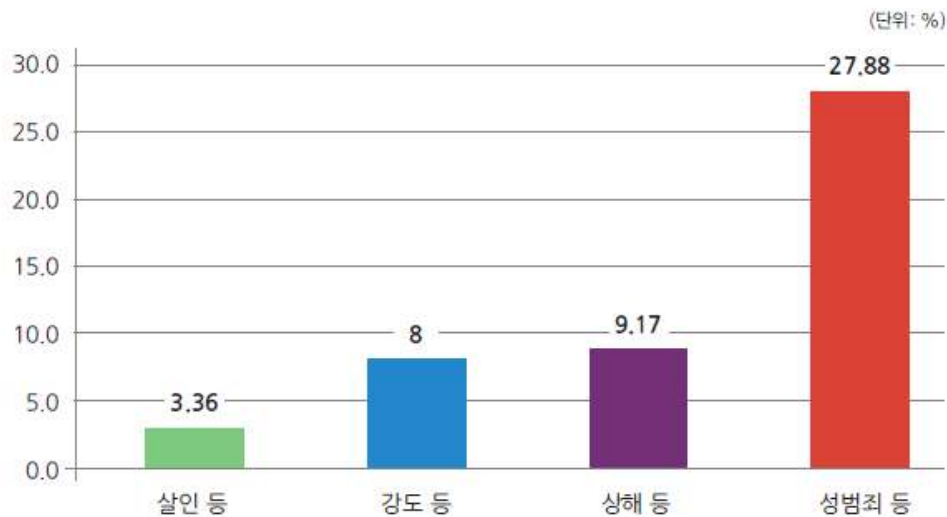
국민참여재판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 배제결정 신청권을 두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는 경우에 해당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 가능성을 도리어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범죄사건의 재판에 관한 교육 실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비하여 성폭력 범죄의 무죄 판결 비율은 17% 이상 높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결국 성폭력 범죄를 재판하는 배심원들에게 성 고정관념이 있었거나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sup>3)</sup>

공판 개시 전에 배심원에게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의·평결에 참여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sup>4)</sup>

[그림 9] 강력범죄에 대한 배심원의 전부 무죄 판결 비율(2008년~2020년)<sup>220)</sup>



3) 재판장의 적절한 절차 운영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거나 배심원의 평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3) 박기쁨, 위 논문, 105쪽

4) 박기쁨, 위 논문, 103쪽, 허병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6호)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1. 11., 5.

최선의 방법은 그 안에서 배심원들이 스스로 합당한 평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sup>5)</sup>

법원의 절차 단계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sup>6)</sup>

**가) 배심원 선정 단계**

성별의 균형을 이룬 배심원단의 구성, 충분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 확보, 적절한 질문지의 구성과 그에 따른 이유부 기피의 충실한 활용, 무이유부 기피 제도의 적절한 운용

**나) 재판장의 모두 설명**

배심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각 모두진술과 증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형성하기 전에 배심원이 이야기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해체할 필요

**다) 증거조사 단계**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부적절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지,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라) 재판장의 최종설명**

**4) 판결문에 충분한 이유 제시**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고 하고, 대부분의 법관들도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의 이유 제시와 동일한 수준의 판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제1심 판결은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을 존중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

5) 홍진영,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법조 2017

6) 아래의 내용은 홍진영, 위 논문, 311쪽 이하를 요약한 것이다.

##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제언

### “우리들의 연대가 판례를 바꾼다”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1. 시작하며

2017년 5월 5일 준강간 성폭력 피해 후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6년이란 긴 세월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우리의 연대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저도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피해자님께 간절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피해자 상담을 시작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오늘 이 자리 토론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오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촉구하면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늘까지 함께 연대해주신 166개 단체 활동가 여러분께도 든든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이틀 뒤에 신고했다고 피해자답지 않다던, 그래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은 본 사건의 첫 공판을 피해자의 신고 2년 뒤에 시작하게 합니다. 기소도 하지 않고 항고도 기각한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아예 유죄가 될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아 발제자의 발표처럼 피해자는 재정신청까지 한 이후에야 겨우 이 사건을 법정에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마지막 희망을 갖고 3년을 기다렸지만 대법원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법원의 수 많은 성폭력 무죄 판결 사건 중 하나로 사라지게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들이 권리



를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엄중한 문제로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 및 사법부 판단기준에서의 주요쟁점들을 예리하게 제기해주신 두 분의 발제를 보면서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피해의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각 성폭력상담소에는 끊임없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sup>1)</sup>,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 결과들 속에서도 용기내어 민·형사소송을 결심하시는 피해자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 권리보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 같은 성폭력 무죄 판결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 준강간 사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현행 법의 잘못된 논리를 비판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새로운 법을 요구하며 피해자 권리를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두 발제자의 이 사건의 형사사법 절차와 결과에 대한 비판과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오늘 토론에서는 현장 활동가로서, 본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 2. ‘보통의 준강간 사건’공동대응을 위한 연대를 꾸리다

지금까지 반성폭력운동은 상담현장에서 용기 낸 피해자 목소리를 시작으로 상담과 사건지원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한 사람, 한 단체의 힘과 활동만으로는 만들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대 미투운동도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와 피해자 곁에 선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연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온 잘못된 법관행에 공분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

1)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해동안 전국 163개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총 283,916건의 성폭력상담이 이루어짐.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

이 사건 피해자분은 2017년 5월, 천주교성폭력소에 처음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3년 동안 경찰 조사에 신뢰관계인 동석, 대질조사 동석, 무료법률구조 신청, 항고 및 재정신청의 모든 순간에 피해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자 처음으로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준강간 이슈를 우리 사회에 알려내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논의한 끝에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 공대위’) >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7일, 준강간 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정식 발족과 함께 본 사건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은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라며 사건 당일의 모텔 CCTV를 언론에 공개할 결심을 했습니다. 4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신발도 벗겨진 채 부축 없이는 풀더처럼 접힐 정도로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피해자 상태를 악용해 저지른 준강간 성폭력 범죄를 본 일반 시민들은 공분했습니다. 공대위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차원에서 상담현장에서 접한 실제 준강간 상담사례를 분석해 대법원 재판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전성협은 준강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상담통계를 모으고 분석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전국적으로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남성아 발제자께서 발표해주셨듯이 2019년에 준강간 사건으로 상담한 피해자 760명 중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249명으로 전체의 32.7%에 달했습니다. 고소 건 중 유죄가 선고된 가해자는 112명으로 21.9%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준강간 피고인들의 대부분이 재판부에 의해 ‘무죄’라는 날개를 달고 선량한 시민인 양 거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강간 공대위에서는 수 회에 걸쳐 피해자변호사 의견서와 단체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 탄원서, 다른 준강간 피해생존자들의 탄원서, 그리고 6,385명이 시민이 연서명한 탄원서, 활동가들 탄원서를 조직해 대법원에 연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이어나갔습니다.

2022년 3월, 공대위는 2년 가까이 묵묵부답인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하도록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니브 폐미와 인

\*대 성폭력 사망사건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법적 제도적 한계들을 짚어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 활동도 꾸준히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성협이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은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담당자들을 ‘올해 여성인권존중의 걸림돌’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sup>2)</sup>. 2018년 1월, 전성협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산 초코우유를 마셨다” 등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인천지방검찰청의 한웅재·김지윤 검사를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1월에는 “강간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한규현·권순열·송민경 판사를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준강간 공대위는 이와 같은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이제는 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리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3년간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인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명시된 기한을 넘은 의료비와 한도초과한 법률지원의 추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승인 심의 요청 등의 일상지원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피해자분이 혼자가 아니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3.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판결에는 피해자 권리존중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꾸준히 확장되어왔습니다. 종래에는 피해자 임이 알려졌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법적 사회적 구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sup>3)</sup>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꾸준히 개정되어 오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고,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8, 202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자료집.

3) 조정민(2023),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사법발전재단, p887.

우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sup>4)</sup> 그렇다면 본 사건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성폭력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이 기준이 되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의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요인으로 (1)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2)가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니 스스로 올라간 점, (3)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을 한 점, (4)사건 이후 모텔에서 함께 나와 가자해가 산 초코우유와 젤리를 산 뒤 헤어진 점, (5)범행 이틀 후에야 신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한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피해자다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단편적이거나 기억나는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맥락적 상황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클럽에서 모텔 입구까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간음유인과 준강간 미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밝히는 방법 대신 “ ‘성관계에 동의한 상대(?)’와 모텔에 가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30분 이상 차를 타고 타도시 모텔까지 친구들과 함께 갔다”는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해자의 진술을 신뢰합니다. 이를 통해 클럽에서 처음 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이어 모텔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편견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저항, 구조요청하고 탈출해서 신고한 피해자의 성폭력이 아닌 “피해자답지 못한 피해자”의 성폭력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편견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행 협박이 없는, 최협의 강간이 아닌 성폭력을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편견과 통념에 기반해 피해자의 말을 신뢰·수용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도 소홀히 하여 범죄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내고 불기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원도 검찰과 비슷한 맥락에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성을

---

4) 오정희·성연주·박수연(2023), “준강간죄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의 취급, 2018도9781 판례 함께 읽기”(2021. 6. 21. <판례함께 읽기 모임> 발제문 중),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사법발전재단, p377.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발간한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에서 분석된 비슷한 준강간한 사건(2018도9781)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법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sup>5)</sup>

이 사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결했는지, 상당한 비중으로 채택한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등을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만들어진 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는 노력이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운'에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 4. 맺음말 : 더 넓고 단단한 연대로 맞서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대위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대위의 토론제안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 뒤 보내주신 발제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 그동안 공대위가 걸어왔던 길과 걸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 기관인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 사례진행 기록지도 요청드렸습니다. 6년 동안의 긴 싸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표현되지 않은 한줄 짜리 기록들을 보며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연대했던 우리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취하여 동의도 항거도, 어떤 자신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황과 맥락을 포함하는 수사과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든든히 연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5) 오정희·성언주·박수연(2023), 앞의 글, p379.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부 록」

1. 피해자 최후의견\_2019.07.25.\_1심 재판(피고인측 반대로 읽히지 않음)
2. 피해자 발언문\_2020.07.07.\_준강간공대위 발족·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3. 피해자 발언문\_2023.04.27.\_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4. 피해자의 글\_2023.06.\_강간죄개정연대회의 리포트
5.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6.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문





## 〈피해자 최후의견〉

2019.07.25.

1심 국민참여재판

※본 최후의견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승인하여 피해자가 작성, 피해자변호사가 대독키로 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 중 피고인변호사가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하고, 최종으로 재판부에서 불허하여 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심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록합니다.

저는 사건의 피해자 000이라고 합니다.

2017년 5월 5일, 저는 그날 평생 저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약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날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해자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신고가 가능할지 망설이던 기억, 죄가 없음에도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두려움과 수치심, 관할이 아니라는 소리에 거주지의 경찰서에서 서울 외곽의 경찰서까지 한시간 반을 이동할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 혹시 모를 약물 검사를 위해 멀쩡한 머리카락 수십여 개를 뽑았을 때의 고통,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흐린 기억에 의존해 모텔을 찾았을 때 영업방해가 된다면 투덜거리던 모텔 주인의 핀잔과 시선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기소 결정에도 저는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미투, 버닝썬 사건 등이 연달아 화두에 오르면서 드러난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2차 가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거나 혹시 ‘꽃뱀’은 아닐지부터 의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 제 일상은 그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에 대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하루종일 끼니를 걸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3주 동안이나 하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기소가 결정되고 항고마저 기각된 후 재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평범하게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즈음 저는 거의 낮이 나간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갖는 편견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의 처신을 탓할지도 몰라 두려웠으니까요. 당연히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했지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도 없이 자책을 했습니다. 저의 재판정 불출석 사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탓입니다. 상담치료를 받으며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따금씩 불안감이 솟구쳐 오를 때면 정신과를 찾곤 합니다.

가해자는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이던 저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도 모자라 다음날 저를 강간하고도 합의된 관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수상하다며 녹음을 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관계에 동의했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며, 가해자가 굳이 녹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듣고 제 기억이 없는 동안 불법 촬영을 했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관계를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잃은 제 옷을 모두 벗기는 모순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습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취가 아니고서야 그 늦은 시간에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남자 여럿이 탄 차에 동행해 먼 거리의 모텔로 갈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일행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소지품까지 다 버려둔 채로 말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저와 전혀 연고가 없는 동네이며, 당시 제가 생리 중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제 의지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건 당일 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에는 생리혈로 추정되는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가해자가 손가락을 삽입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기에 셔츠 단추 부근에 피가 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당시의 옷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고자 했으나 때가 아니라며 반려되었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곱아있을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고도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뿔뿔해버렸더라면, 당당히 탐지기 조사에 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사건에 매달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면수심의 가해자가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한 채 사회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꼭 죗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 간청합니다. 부디 이성적이고 합당한 판결로써 제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입장문〉

2020.07.07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

약 3년 전, 저는 저와는 무관할 것이라 믿었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조각난 일상의 파편은 아직 채 붙지 못했고, 끝내지 못한 싸움은 현재까지도 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새벽을, 죄가 없음에도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두려움과 수치심을 기억합니다.

사건 관할서로 가기 위해 무려 한 시간 반을 이동하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과 혹시 모를 약물 검사를 위해 떨썈한 머리카락 수십여 개를 뽑았을 때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흐린 기억에 의존해 모텔을 찾았을 때, 영업방해가 된다면 투덜거리던 모텔 주인의 편견과 시선을, 그것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던 무력한 나 자신을 기억합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고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이 가해자를 심판해주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거짓도 없이 수사에 임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도록 도운 친구들과 모텔 주인에게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는 것에는 의문이 들었으나, 직접적인 가해자라도 처벌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들어주리라 생각했던 법은, 가해자의 말만을 듣고 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의견과 계속되는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가며 억겁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케는 끝내 저를 버리더군요.

저는 정말 많은 걸 바라지 않았는데, 단지 저의 만취상태를 이용하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고통을 준 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랐을 뿐인데 아무도 저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본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과 종일 끼니를 걸렀던 나날들, 나의 처신을 탓할지 몰라서, 편견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보냈던 수많은 자책의 밤들을, 저는 이제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며, 또 보통의 피해자입니다.

성실히 저의 일을 하고, 가끔은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일상을 즐기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런 저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운이 좋지 때문이 아니라 저의 사건이 가해자같은 남성들의 잘못된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건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오히려 제 3자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와 성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한 채 사회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섭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더욱 힘을 내 싸우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 쉬고 싶습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 피해자 입장문〉

2023.04.27.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믿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너털너털해진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세상에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가해자는 결국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당당하게 이 사회를 활보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오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비록 법정 다툼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붙일 것이고 조용한 분노는 계속 타올라, 그 불길은 점차 진화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라 믿고 견뎌내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저의 영혼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단단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적이어서도,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것입니다. 그 날까지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또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연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 또한 연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생존자 수기

### 그 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 J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피해생존자)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좋다.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이후에도 웃는 얼굴로, 혹은 무심하게 주고 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차가운 세상을 약간 더 따뜻하게 데워 주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녕하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이 싫고 한국어가 듣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서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구 세계로 잠깐 동안의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명백한 거부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강간 피해 생존자이고, 동시에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어 누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준강간 피해 생존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강간도 준강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닐까?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괴롭다.

낯선 장소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와 맞이하는 아침의 불쾌함을 아는가?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생각해 보라. 당신은 술에 취한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앞 뒤의 정황은 알 수 없다. 당신은 나체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 하는 그때 그 낯선 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을 걸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다 한다. 그리곤 다시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진다.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거절의 말과 몸짓은 상대방의 무력으로 제압된다. 그는 원하던 일이 끝나고 나자, 어찌면 무해해보일지도 모를 표정으로 태연하게 다시 말을 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간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가?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으로 한숨만 나왔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대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는 다르다.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태어나서 겪어본 경험 중, 타인에 의해 내가 사라지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강간’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얻어맞거나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공포 속에 있었다. 최선을 다한 저항과 거듭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나를 제압했다. 마법이 풀리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때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다. 현행법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거절은 있었으나 동의는 하지 않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전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강간이었지만, 법원은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일어난 성폭력은 어떠한가? 나는 클럽 안에서 낯선 남성과 술을 한 잔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 한다. 나의 사라진 시간은 혼자 서 있지도 걷지도 못 하고 소지품 하나 없이 낯선 남성들에 의해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몇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매고 있던 친구들의 메시지, 방 안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나의 호소보다 조사나 법정진술때마다 말을 바꾸던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항거불능이어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값인가? 그것도 아니면 술에 취해 발생한 성폭력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다. 그리하여 나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 나의 고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생각해본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거절도 동의였을 수 있다며 가해자를 연민으로 끌어안은 이 법의 무책임함인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에도 내가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할까? 어떤 말과 몸짓으로 어떻게 저항했고 가해자가 그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는지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사관에게 하나하나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일의 지난함을 알까? 보수적인 ‘법’을 다루는 이들이 편견으로 바라볼까봐 매니큐어를 지우고 단정해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며 느꼈던 그 수치심을



알까? 거둬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항소나 재정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혹여나 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과 싸웠던 걸까? 내 싸움의 대상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회는 동의할 수 없었을 때, 저항했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호소를 외면했다. 귀찮아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말을 더 감싸안으며 방어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동의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법과 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순 없다. 폭행, 협박 뿐 아니라 무력 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 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 기준이 ‘동의없는 성적행위’ 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 날 일어난 일의 이름을 모른다.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재정신청까지 한 끝에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받기만을 바라던 피해자의 3년의 기다림은 처참히 무너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3년전 2017년 5월 5일로 거슬러간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나체상태로 이미 강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더욱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다. 피해자는 빨리 방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던 중 다시 잠이 들고 만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통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려 던 과정에서 재강간을 당하게 된다.

사건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가해자 혼자가 아니라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가해자와 그 일행 3명은 만취한 피해자를 홍대 클럽에서 서울 외곽까지 데려갔고, 피해자는 혼자서는 서지도 걸지도 못 하고, 소지품하나 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짐짝처럼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 모텔 직원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내어줬다. 가해자와 그 일행, 모텔직원까지 CCTV에 있는 다섯명의 남성들 모두는 늘상 있던 일처럼, 당연한 것처럼 만취한 여성을 모텔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로 조력하며, 가해자를 도왔다.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목도하며 경악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는 시작도 끝도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타겟이 되어 가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에 의해 성범죄에 이용되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고 촬영하며 범죄를 조장하던 소라넷,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벌어지던 버닝썬, 그런 성폭력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고 시청해오던 웹하드카르텔까지.. 우리 사회는 클럽을 매개로 혹은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해왔다.

이 사건 또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CCTV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은 ‘성관계를 동의한 상태’였고,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거짓에 의해 변질되었고, 가해자의 범죄를 조력했던 남성들은 ‘동의해서 성관계하러 간다길래 데려다준 것 뿐이다’ 라며 사건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허울뿐인 훈계를 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다행히 ‘준강간미수’에 대해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정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법리판단이 쟁점인 1심 재판을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며 검찰이 죄를 묻지 않고 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구형’을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공판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불기소이고,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기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성폭력일리 없다는 편견과 통념에 갇힌 검사, 재판부, 배심원들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절망할 수 밖에 없었고 1심 재판은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배심원들의 5:2 무죄평결을 그대로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수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네

명의 남성이 조력하고, 모텔직원의 방관까지 더해져 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우리 사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만취하였거나, 클럽을 매개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처벌도 묘연하다.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면,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이며 수사, 사법체계도 공범이다.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도 2017년 5월 5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법부가 멈춰진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도록 바뀌야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과 통념 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만취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사법부가 철저히 외면해온 수많은 준강간 사건의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길 바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제 2020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문>

##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견지도 서지도 못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조력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 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무죄 확정이 되기까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기관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인식과 태도, 판결을 마주했다. 2017년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지난 6년간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도 없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언반구 남기지 못한 채, 남성 4명이 탄 차에 홀로 태워져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서울 외곽까지 가게 되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대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경찰은 “클럽에서 발생한 건이 사건(성폭력)이 되겠냐” 고 되묻기 까지 했다.

재정신청 후 어렵게 일부 기소가 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 불기소라고 말하며 범죄입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 또한 검사에게 “백지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준강간 실행의 착수와 중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본 사건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음이 드러났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준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부터 지난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바뀌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도 ‘동의를 있었다’는 가해자의 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와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해온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학교의 뒷풀이에서, 직장 회식에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다가 오로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형법 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클럽에 간’, ‘술에 취한’,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해 온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준강간’이라는 범죄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무죄 확정 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 클럽에서 여성을 만취시키는 행위, 다수의 남성이 강간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 불법촬영과 유포에 이르는 위협, 수년 간 법적 싸움을 한다면 피해자를 모욕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카르텔을 대한민국 법원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 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여 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였다.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

부를 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04.27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166개단체)**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토론회 -**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23.07.04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